

§ 통합투자세액공제 (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)



▣ 제도개요

-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**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**에 세액공제 적용

▣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소비성서비스업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**법인**(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) 사업자
 - 기계장치 등 **사업용 유형자산**(토지, 차량 등 조특칙 별표1 제외), **특정 시설 · 업종** 관련 **유 · 무형자산**에 투자
- (공제액) $\{ \text{당해연도 투자액} \times \text{공제율} \} + \{ (\text{당해연도 투자액} - \text{직전3년 평균 투자액}) \times 3\%(\text{국가전략 } 4\%) \}$
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일반	10%	5%	1%
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	12%	6%	3%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('21.7.1.~'24.12.31)	16%	8%	8%

* $\{ (\text{당해연도 투자액} - \text{직전3년 평균 투자액}) \times 3\%(\text{국가전략 } 4\%) \}$ 은 $\{ \text{당해연도 투자액} \times \text{공제율} \}$ 의 2배 한도 적용

▣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**2년** 내(특정 시설 · 업종 유 · 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**5년**)에 해당 자산을 **처분 · 임대**한 경우
- 투자완료일로부터 **5년**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**목적으로 전용**한 경우
 -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**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**(日 0.025%, 2022.2.15. 이후 0.022%)을 **가산**하여 납부

§ 임시투자세액공제 ('23년만 한시적 공제율 더 크게 적용)



▣ 제도개요

- 투자촉진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(최고 13%p 더)을 상향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

▣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2023년 투자한 금액 (2022년 이전 투자분, 2024년 이후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제외)
 - 대상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자산
- 총 공제세액 = (2023년 투자액 × 당기분 공제율) + (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× 증가분 공제율)
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3년 평균대비 증가분
일 반	12%(+2p)	7%(+2p)	3%(+2p)	10%(+7p)
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	18%(+6p)	10%(+4p)	6%(+3p)	10%(+7p)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(‘24.12.31.까지)	25%	15%	15%	10%(+6p)

▣ 공제율 예시

-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'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35% 투자세액공제율 적용'
-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'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28% 투자세액공제율 적용'
-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'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22% 투자세액공제율 적용'

§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사례(3-1)



사례1

-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,000억원을 투자하면서,
 - 2023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 - 2024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

구 분 (단위 : 억원)	2023년 투자분 공제액			2024년 투자 분 공제액			2년간 공제액
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
23년 추가투자 시	90 1,500×6%	50 500×10%	140	30 1,000×3%	-	30	170 (50↑)
24년 추가투자 시	60 1,000×6%	-	60	45 1,500×3%	15 500×3%	60	120

- 23년에 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, 23-24년 2년동안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 적용
24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50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

§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사례(3-2)



사례2

-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하면서,
 - 2023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 - 20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

구 분 (단위 : 억원)	2023년 투자분 공제액			2024년 투자 분 공제액			2년간 공제액
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
23년 추가투자 시	36 200×18%	10 100×10%	46	12 100×12%	-	12	58 (13↑)
24년 추가투자 시	18 100×18%	-	18	24 200×12%	3 100×3%	27	45

- 23년에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, 23-24년 2년동안 총 58억원의 세액공제 적용
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13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

§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사례(3-3)



사례3

- 중소기업 C사가 일반 사업용자산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하면서,
 - 2023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 - 20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

구 분 (단위 : 억원)	2023년 투자분 공제액			2024년 투자 분 공제액			2년간 공제액
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
23년 추가투자 시	24 200X12%	10 100X10%	34	10 100X10%	-	10	44(9↑)
24년 추가투자 시	12 100X12%	-	12	20 200X10%	3 100X3%	23	35

→ 23년에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, 23-24년 2년동안 총 44억원의 세액공제 적용
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9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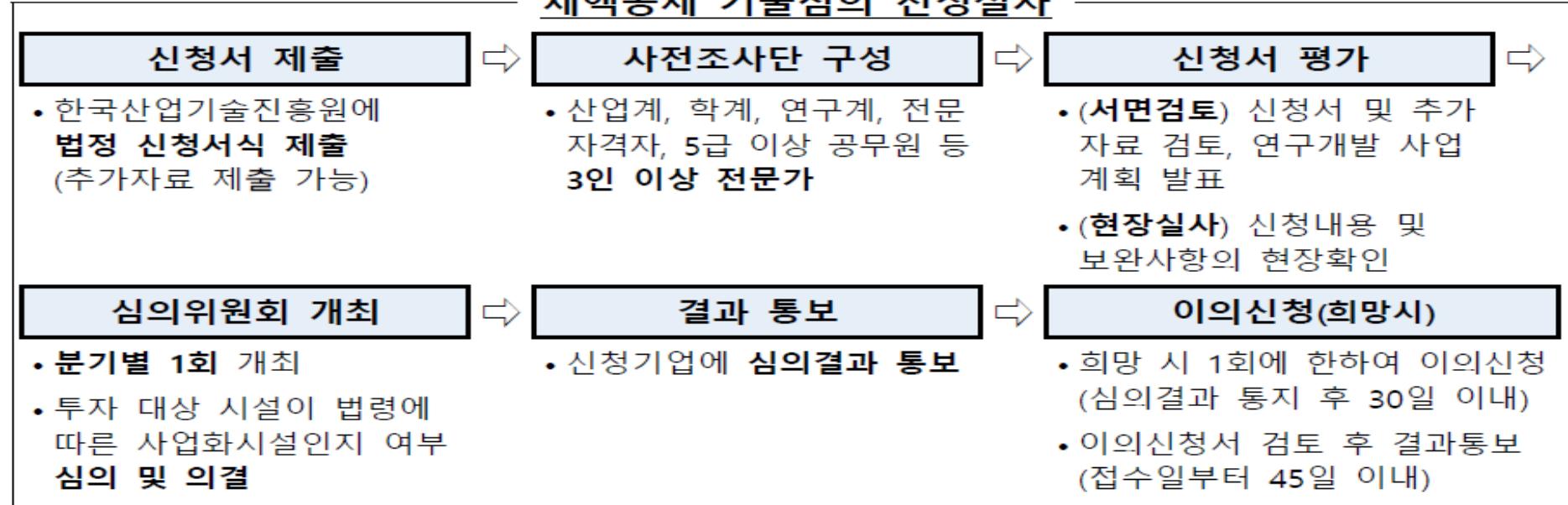
§ 사전 세액공제 신청, 후 기술 인정 (조특령§21¹³, 조특칙§13)



제도개요

- 투자시설이 법령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“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” 심의를 통해 결정

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절차



- 23년부터 고율의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 뒤, 후 시설인정 가능
 - 세액공제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시설인정 신청 (상시 접수 중)
 -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(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외)에 걸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시설 인정 신청



§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 신청

☞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(<https://taxcredit.kiat.or.kr>)에서 온라인 신청 상시 접수

- (신청서류 첨부) 알림마당 → 신청서류 자료실

신성장·원천기술

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.

연구개발비



세액 공제율(%)

• 중소기업	30+α%
• 코스닥·증권기업	25+α%
• 증권·대기업	20+α%

시설투자비



세액 공제율(%)

• 중소기업	10% or 12%+α%
• 증권기업	7% or 5%+α%
• 대기업	5% or 3%+α%

국가전략기술

국가전략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.

연구개발비



세액 공제율(%)

• 중소기업	40~50%
• 코스닥·증권기업	30~40%
• 증권·대기업	30~40%

시설투자비



세액 공제율(%)

• 중소기업	16%
• 증권기업	8%
• 대기업	6%

§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 신청

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(<https://taxcredit.kiat.or.kr>)



공지사항

2023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기간 안내(수정)

2023-01-18

'22년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기술심사 신청 기간 공지

2022-04-12

신청서류자료실

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 서식

2021-01-11

FAQ

- Q 저희회사는 신규 설립 기업이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,...
- Q 국세청에 사전심사 제도가 있던데 한국산업기술진흥...
- Q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비 중 장비의 경우 외환차...
- Q 인건비에 퇴직금, 상여금, 본인학자금 지원 등의 경비...
- Q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시 기업이 분할될 경우 혹...

§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 신청



기술인정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_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)

서식명	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투자	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
1. 인정 신청서	○	○
2.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	○	○
3. 시설투자 명세서	○	○

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22.8.12.>		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[별지 제7호 서식] <개정 2020.8.12.>		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[별지 제8호 서식] <개정 2022.8.12.>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(사업화시설투자) 인정 신청서 *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✓ 표시를 합니다.		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* 기술구분별, 대상기술별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각각 작성 *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✓ 표시를 합니다.		시설투자 명세서 * 기술구분별 시설투자 명세서 각각 작성 *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✓ 표시를 합니다.									
신청인	상호 (법인명)	사업자 등록번호	①업종	기술구분	[] 신성장원천기술 [] 국가전략기술								
	대표자 성명		②기업 유형 [] 대기업 [] 중견기업 [] 중소기업	코스닥 상장여부	대상기술 예시) 1-가-1, 2-가-1 등 모두 작성								
	③사업장 주소 (② -)												
담당자	부서	성명 (직위)		(단위 : 원)							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)	전자우편		순번	과세 연도	대상 기술	장소 (소재지)	자산 번호	상세내역	취득 일자	구입처 상호 또는 법인명	사업자 등록번호	특자금액
	④신청 대상 ⑤과세 연도 (조특칙 별표8의8 ('17~'19), 별표8('20~))	⑥대상기술 (조특칙 별표8의8 ('17~'19), 별표8('20~))	⑦장소(소재지)	⑧투자자산수	⑨투자금액(원)								

- 사업화 시설투자 개요
※ 목적, 투자 규모, 금액, 기간, 생산제품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시설 설명 등
- 신성장·원천기술 생산품
※ 신청 시설 관련 제품 명칭, 성능 및 사진 등
- 제조공정
※ 공정도 및 공정과정 등 상세내용 작성
- 시설투자 내용 *별지8호로 대체 가능